

2023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연구

2023. 9 . 25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 제출문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9. 25

- 연구기관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
- 연구원 : 주성빈 (동의대학교, 교수)  
심혜인 (영산대학교, 교수)  
이상훈 (경성대학교, 교수)  
박여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보조연구원 : 김승현 (동국대학교, 연구원)  
김동록 (신라대학교, 연구원)
- 자문위원 : 김정덕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숙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홍남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총괄자치경찰과 과장)  
윤태웅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연구부장)  
구정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연수 (동국대학교, 교수)

(요약문)

#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술

## 요 약

### □ 연구의 목적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경찰사무 일부만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일원화 모델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일원화 모델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치안 개선대책 추진’, ‘시민참여 및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자치경찰사무 합리적 운영 및 적극적 홍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다중운집 행사 사고 대처 등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 최대도시 서울의 치안 특성에 부합하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울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자치경찰 운영방안 관련 정책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2년 6개월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한 주요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조직·인사·재정·사무 영역에서 시의회가 조례 재·개정 및 예산 심의를 통해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를 수행,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 □ 서울시 자치경찰의 현황 및 자치경찰활동 환경 분석

먼저, 서울시 자치경찰의 현황 및 자치경찰활동 환경을 분석하였는 바, 서울시 치안상황은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행정안전부, 2021년 통계 기준)에서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 치안환경의 특성은 전반적인 범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정 지역에 밀집된 범죄율 증가, 특정 범죄유형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 요 약

### □ 자치경찰 관련 법규와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의 분석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자치경찰 관련 법규와 자치경찰 사무 현황을 조사, 자치경찰 관련 서울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타 시도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조사하고, 운영방식 및 조직 구조를 분석하였는 바, 제주자치경찰단의 운영방식 및 조직구조와 함께 제주 자치경찰 운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자치경찰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치안활동 강화' 영역에서는 민-경 협력을 기반으로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였지만, 예산 한계와 정책 실행 어려움이 한계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및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영역에서는 시민 참여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은 성과로 평가되었지만, 의견 수렴과 협업 프로세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치경찰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홍보 추진' 영역에서는 치안 협업, 임용권 행사, 재정 관리, 홍보를 추진하여, 치안 협업을 개선되고 홍보 활동이 활발해진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 임용권 행사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 한계는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일원화 모형의 법적·제도적 모순,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운용체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인사권, 자치경찰조직권, 자치경찰재정권, 자치경찰행정권이 개선되어야 하고,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한 지원, 국가경찰 사무의 자치경찰 사무화, 서울시 자치경찰의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 타 시도 및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분석

부산시 자치경찰, 대전시 자치경찰, 인천시 자치경찰의 운영 성과를 조사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3개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사하고, 주요 생활치안 현안문제와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 요 약

해외 사례분석은 2000년 런던시 경찰의 자치경찰 전환 이후, 자치분권과 자치경찰 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일본의 이원화된 절충형 경찰체제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자치경찰 운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자치경찰의 조직·인사·감독권, 자치경찰의 예산, 각 단위별 경찰조직의 운영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 □ 서울형 자치경찰 모델의 정립

서울형 자치경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부분 이원화 모델(제1안)과 전면 이원화 모델(제2안)로 제시하고, 각 모델별 조직구조, 사무, 신분 및 임용, 지위, 재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직구조의 경우, 제1안은 자경위,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전면 이원화 모델은 자경위 신설, 시 경찰청 이하를 이관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제1안은 생안, 교통, 지역경비, 특사경, 일부 수사 사무를, 제2안은 시·도경찰청 경찰사무 전체(정보, 외사, 보안, 전국적 사건 등 제외)를 이관한다. 제1안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즉, 시경찰청 이하 36%의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제2안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즉 시경찰청 이하 대다수의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모델(안)별 비용 추산을 하였고, 제1안은 단계별 시행을 가정하고, 시행시 소요비용은 도입단계별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의 소요비용을 추산한다. 제2안의 소요 비용 확보 방안은 세원조정 전까지 현행 시경찰청 예산을 자치경찰에 재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자치경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크게 5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및 규제 권한 이관 방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기초로 서울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설치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율방범활동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는 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1안과 2안으로 구분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법령에 근거하여 비용 지급 방안과 사업비 지급 내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 요 약

셋째, 서울특별시 통합 자치경찰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 전제조건, 기본방향, 주요 내용, 특히, 서울시와 자치경찰 간의 연계사무 수행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서울시 자치경찰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근거로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서울시 이관을 제안하였고, 연계사무의 발굴을 통한 자치경찰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자율성 담보를 위한 서울시 자치경찰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 방안, 자치경찰도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다섯째, 서울시 자치경찰의 실질적 임용권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는 바, 현행 경찰임용권 수입 및 재위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정보의 완전한 접근 관련 사항 개선을 제안하였다.

# 목 차

I .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II . 서울시 자치경찰의 현황 및 자치경찰활동 환경 .....	4
1. 서울시 자치경찰의 현황 .....	4
2. 서울시 자치경찰활동 환경 .....	7
III .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조례 현황 .....	12
1. 자치경찰 관련 서울시 조례들 .....	12
2. 자치경찰 관련 서울시 조례의 주요 내용 .....	20
3. 타 시·도 자치경찰 관련 조례 사례 .....	22
IV .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	27
1.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 .....	27
2.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한계 .....	30
V . 타 시도 및 해외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	36
1. 타 시도 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한계 .....	36
2. 해외 사례분석 .....	40

VI. 서울형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 .....	44
1. 서울형 자치경찰 모델(안) .....	44
2. 모델(안)별 조직구조와 비용 추산 .....	50
VII.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	55
1.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및 규제 권한 이관 방안 .....	55
2. 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방안 .....	63
3. 서울특별시 통합 자치경찰 조례 제정 방안 .....	70
4. 서울시 자치경찰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	73
5. 서울시 자치경찰의 실질적 임용권 확보 방안 .....	76
〈참고문헌〉 .....	80

## 표 목차

〈표 1-1〉 내용의 구체적 범위 .....	3
〈표 2-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	5
〈표 2-2〉 경찰사무의 구분 .....	6
〈표 2-3〉 법률상 자치경찰사무 .....	7
〈표 2-4〉 서울시 주요 자치경찰사무 .....	8
〈표 2-5〉 2022년 각 분야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광역단위) .....	8
〈표 2-6〉 2022년 서울시 분야별 안전 등급 .....	8
〈표 2-7〉 2022년 서울시 구별 안전 등급 .....	8
〈표 3-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14



〈표 3-2〉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	22
〈표 5-1〉 부산지역의 주요 치안문제와 자치경찰의 역할 .....	37
〈표 5-2〉 인천지역의 주요 치안문제와 자치경찰의 역할 .....	40
〈표 6-1〉 모델의 구체적 내용 .....	48
〈표 6-2〉 연도별 서울시 경찰인력 현황 .....	52
〈표 6-3〉 소요비용 추산의 기본 틀 .....	53
〈표 6-4〉 비용 추산의 기본 틀 .....	53
〈표 7-1〉 도로교통법령 신구조문표 .....	57
〈표 7-2〉 자율방법 활동 지원 방안의 비교 .....	68
〈표 7-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74
〈표 7-4〉 임용권 재위임 현황 .....	78

## 그림 목차

〈그림 2-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조 .....	5
〈그림 2-2〉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수 .....	6
〈그림 5-1〉 영국 자치경찰 운영체계 .....	41
〈그림 6-1〉 부분 이원화모델의 조직구조 .....	51
〈그림 6-2〉 전면 이원화모델의 조직도 .....	5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2020년 12월 9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학교폭력 및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기대와 달리 국가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경찰사무 일부만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토록 하는 일원화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일원화 모델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완전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즉, 지역 특성 및 치안 수요에 맞는 창의적·자율적 경찰 서비스 제공의 한계,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성 저하,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서비스 제공의 한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있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 조직권 등은 갖고 있지 않음으로서 형식적인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대도시 서울의 치안 특성에 부합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울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의 정립이 요구되고,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연구의 목적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 특성과 치안수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경찰사무 일부만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시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일원화 모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원화 모델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보

호 중심의 실질적 치안 개선대책 추진’, ‘시민참여 및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자치경찰사무 합리적 운영 및 적극적 홍보 추진’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대응에서 보듯 다중운집 행사 사고 대처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 겪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도시 서울의 치안 특성에 부합하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울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가 잦은 서울에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자치경찰 운영방안 관련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여건하에서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 6개월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한 주요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조직·인사·재정·사무 영역에서 시의회가 조례 재·개정 및 예산 심의를 통해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가) 과거와 현재의 실태분석

현행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아울러 해외 및 타 시도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 나) 미래의 방안

서울형 자치경찰 모델을 수립하고,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연구한다.

#### 2)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과 자치경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국가기관(예컨대, 서울경찰청 등)에서 제공하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자치경찰 서비스를 연구한다.

#### 3) 내용적 범위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및 타 시도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서울형 자치경찰 모델을 수립하고,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연구한다.

〈표 1-1〉 내용의 구체적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사전 분석	○서울 자치경찰의 현황 및 자치경찰활동 환경 분석
연구 기획·설계	○현행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현황 분석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분석
	○해외 및 타 시도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분석
모델 개발	○서울형 자치경찰 모델 수립
정책 방안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 나. 연구의 방법

### 1) 문헌조사 연구방법

#### 가) 서울시의 치안상황 관련 자료와 연구물 등 수집 조사, 분석

조사 자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 정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자료, 기타 정부 기관의 내부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각종 조사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정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다. 연구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능한 한 최신의 것을 적용한다.

#### 나) 자치경찰제도의 문헌, 논문, 각종 보고서 등 조사 및 활용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 등 수집, 조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자치경찰제 관련 각종 서적과 보고서는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었다. 문헌의 조사범위는 경찰학, 법학, 행정학 분야를 주로 하고, 전체 사회과학 분야까지도 포함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수집은 관련 논문, 인터넷의 웹사이트와 발간자료집 등을 기초로 수집한다.

#### 다) 문서, 회의자료, 브리핑자료, 동영상, 인터넷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

문서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자료를 활용한다. 또 관련 부서의 내부 보고자료 등을 분석, 검토 활용하였다. 브리핑자료는 기관의 공식적 언론 배포 브리핑 자료이다. 이 자료는 기관의 공식

적 입장을 이해하는데 참고한다.

동영상 자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기관의 홍보용으로 만든 인터넷 상 자료이다. 인터넷 자료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관련 자료나 문헌들이다.

## 2) 자문회의의 구성. 운용

### 가) 목적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서 서울시 자치경찰 조직운용 방안 및 서울형 자치경찰제의 모델, 시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나)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문단의 인원은 5명 내외로 하였으며, 인원 및 위원의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 다) 운영

총 3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회의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 Ⅱ. 서울시 자치경찰의 현황 및 자치경찰활동 환경

### 1. 서울시 자치경찰의 현황

#### 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1) 위원의 구성

위원회는 통 7명으로 구성되었고, 7명에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된다. 위원장 1명은 정무 1급에 보하며, 위원 7명 중 시장이 1명 지명·임명한다. 상임위원 1명은 정무 2급에 보하며,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위원회 의결 및 위원장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 시책 수립 등 「경찰법」 제24조에서 지정하고 있다.

## 2) 조직 및 주요 업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조는 자치경찰위원회 아래에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은 1국 3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조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https://gov.seoul.go.kr/apc/>)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표 2-1〉과 같다.

〈표 2-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p>1 <b>자치경찰총괄과 주요 업무</b></p> <p>사무·법령제도, 위원회 운영, 인사, 고충심사, 민원·언론대응, 홍보 등</p>	<p><b>자치경찰 정책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 수립</li> <li>서울시 추진 자치경찰 협력사무 총괄</li> <li>자치경찰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리 및 건의</li> <li>시민정책자문단, 자치경찰 정책개발TF 운영</li> </ul> <p><b>자치경찰 위원회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위원회 운영</li> <li>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및 관리</li> <li>안전 관련 타 기관 협의 및 조치결과 관리</li> </ul>	<p><b>자치경찰 인사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관 인사관리</li> <li>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운영</li> <li>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li> </ul> <p><b>민원 홍보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제 및 정책홍보 계획수립, 시행</li> <li>자치경찰 관련 언론 대응</li> <li>자치경찰 관련 민원, 건의사항 처리</li> </ul>
<p>2 <b>자치경찰협력과 주요 업무</b></p> <p>자치·국가경찰간 협력, 치안정책 연구, 사건·사고모니터링, 경비협력 등</p>	<p><b>경찰 협력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市행정-치안행정 업무협의-조정</li> <li>일일치안상황 및 주요 사건사고 보고 총괄</li> <li>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 경찰청과의 협의사항 관리</li> <li>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사무 협력, 조정</li> <li>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사항 협의</li> </ul> <p><b>여성 청소년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청소년 주요사업, 사건사고 관리(시·경찰 협력)</li> <li>시·경찰 주요사업 협력 및 대응</li> <li>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실종, 아동학대</li> </ul>	<p><b>생활안전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업무 총괄</li> <li>생활안전계, 관광경찰대, 지하청경찰대 행정계</li> <li>서울시-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주요사업 협의</li> </ul> <p><b>교통경비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감소 대책 총괄</li> <li>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 소관업무</li> <li>서울시-서울청 협업과제 발굴 및 대외 협력업무</li> <li>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서울경찰청 협력업무</li> </ul>
<p>3 <b>자치경찰지원과 주요 업무</b></p> <p>자치경찰 교육, 후생복지, 사무예산, 사무감사 등</p>	<p><b>교육후생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 후생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li> <li>자치경찰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li> </ul> <p><b>자치경찰 재정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집행 및 결산</li> <li>자치경찰사무 국가비용보전 관계 개선 추진</li> <li>경찰공무원의 e호조·물품시스템 접속환경 구축·사용지원 및 e호조 교육</li> <li>자치경찰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를 위한 회계제도 마련</li> </ul>	<p><b>인권감사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li> <li>자치경찰사무 경찰관 주요비위사건 감찰요구</li> <li>자치경찰관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li> <li>인권보호 시책 수립, 인권 자문회의 운영</li> </ul>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https://gov.seoul.go.kr/apc/>)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https://gov.seoul.go.kr/apc/>, 검색일 2023. 08. 30)

## 2) 법률상 자치경찰사무

현행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법률상 자치경찰사무



법률상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b>생활안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 방법활동지원, 재난·재해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li> <li>✓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등</li> </ul>
<b>교통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단속, 안전시설설치관리, 교육홍보, 주민교통활동지원, 교통각종허가신고 등</li> </ul>
<b>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b> 	
<b>수사</b> <small>「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상세히 명시</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li> <li>✓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li> <li>✓ 공연음란, 성적목적에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li> <li>✓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li> <li>✓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li> <li>✓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 범죄</li> </ul>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https://gov.seoul.go.kr/apc/>, 검색일 2023. 08. 30)

## 3) 서울시 주요 자치경찰사무

서울시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는 <표 2-4>와 같다.

<표 2-4> 서울시 주요 자치경찰사무

서울시 주요 자치경찰사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b>생활안전</b> 	1. 순찰 및 시설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CCTV 통합관제,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범죄예방 순찰 등
	2.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지도	주민참여 지역협의체 협업·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재난우려·안전사고·재해·재난발생 시 긴급구조지원, 해당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청소년 등 학대 및 성폭력 예방, 학대사건 대응,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지원, 학대예방인력 운영 등
	5. 사회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경범죄 위반 단속, 기초질서 확립 홍보, <b>풍속업·사행행위 단속, 성매매 단속·예방</b>
	6. 그 밖의 지역주민 생활안전 관련 사무	생활안전 관련 112 신고처리, 지하결경질대, 내수연경질대, 관광경질대, 유실물·분실물 관리, 응급구조대상자 지원
<b>교통활동</b>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법규 위반 단속·신고처리, 음주단속장비 관리
	2. 교통안전시설·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교통안전활동 홍보 등
	5.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안전기준 초과차량 허가처리, 도로공사·점용허가 조치, <b>버스전용차로</b> , 통행 지정관리 등
	6. 그 밖의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교통사고·법규위반사항 112 신고처리,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정체 시 교통관리, 교통안전대책 수립, 교통관련 기관 협의 등
<b>지역경비</b>	<b>다중운집행사</b>	<b>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및 안전활동 지원</b>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https://gov.seoul.go.kr/apc/>, 검색일 2023. 08. 20.)

## 2. 서울시 자치경찰활동 환경

### 가. 서울시 치안상황



1)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 2021년 통계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의 감소로 범죄분야는 5대 범죄로 인한 전년 대비 사망자는 7.8% 감소하였다. 즉, 386명에서 356명으로 감소하였다. 발생 건수는 10.4%로 감소하여, 462,290명에서 414,296건으로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7%(2,858 → 2,725명) 감소하였는데, 특히 차 대(對) 보행자 사망자가 8.9%(1,056→962명)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또 교통단속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는 30.5% 증설되어, '20년 12,606대에서 '21년 16,449대가 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의 지방비 예산이 전년 대비 83.6%로 증액되어, 806억에서 1,480억이 되었다.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17년 2.9명 → '21년 0.4명)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서울시 안전지수 등급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 등급에서 서울은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다.

〈표 2-5〉 2022년 각 분야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광역단위)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특·광역시(8개)	서울	세종	세종	서울	세종	세종
도(9개)	경기	경기	전북	경기	경기	제주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 2022년 전국지역안전지수

〈표 2-6〉 2022년 서울시 분야별 안전 등급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서울특별시	1	4	3*	1	2	5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 2022년 전국지역안전지수

〈표 2-7〉 2022년 서울시 구별 안전 등급

	시도	시군구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서울	종로구	3	5	5	5	3	5
2	서울	중구	4	3	5	4	2	3
3	서울	용산구	4	2	4	2	3	4
4	서울	성동구	4	2	2	1	2	3

5	서울	광진구	4	2	3	2	1	3
6	서울	동대문구	5	4	3	2	2	5
7	서울	중랑구	4	3	3	2	2	5
8	서울	성북구	5	4	1	2	2	4
9	서울	강북구	3	5	3	4	3	5
10	서울	도봉구	3	4	1	1	3	5
11	서울	노원구	3	2	2	1	2	4
12	서울	은평구	1	4	2	2	2	4
13	서울	서대문구	4	3	2	3	3	4
14	서울	마포구	5	3	4	2	3	4
15	서울	양천구	4	2	2	1	1	3
16	서울	강서구	4	4	2	1	3	4
17	서울	구로구	5	3	3	2	1	5
18	서울	금천구	5	4	4	3	3	4
19	서울	영등포구	3	4	4	2	1	4
20	서울	동작구	3	4	2	2	2	2
21	서울	관악구	3	3	3	3	3	4
22	서울	서초구	2	3	3	2	1	2
23	서울	강남구	5	4	5	3	2	2
24	서울	송파구	3	2	3	3	1	3
25	서울	강동구	3	3	2	1	1	4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 2022년 전국지역안전지수

### 3) 서울시 치안환경의 특성

서울의 전반적인 범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5대 범죄는 2017년을 기준으로 대략 305건 가량 감소하였다.(2017년 107,835 → 2021년 80,445건) 그러나 범죄검거율은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어, 지능화되고 치밀해지는 범죄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2017년 검거율 74% → 2021년 검거율 71%)

특정 지역에 밀집된 범죄를 면적당 범죄발생 밀도를 기준으로 볼 때,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유흥 및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은 자가 점유가구의 비중이 낮고 인구이동률이 높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 간의 유대가 낮아 범죄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범죄감소를 이루어내지 못한 바, 치안 인프라의 실효성 평가 및 효과적인 주거안전사업에 대한 정책이 요구된다.

특정 범죄유형은 증가하고 있는 바, 서울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인구 밀도를 감안하더라도 타지역에 비해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하였다.(서울: 1,845건, 경기남부: 1,437건, 인천: 592건, 부산: 459건) 특히 골목길과 같은 노상에서 빈번하게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가로등 수가 적거나 조명이 충분치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범죄발생의 빈도가 많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폭력 범죄도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서울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서울시 자치경찰 활동의 특성

### 1)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 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서울시 자치경찰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와 서울경찰청 및 각 자치구와 협업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과 활동에 대해 최초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식화하였다.

여성가구 침입방지를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별도의 범죄예방 디자인 태스크 포스를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3개소(수유3동, 신림동, 구로2동)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자 심리위축 및 주민불안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 그리고 지역유형에 따른 공간영역, 시간대 별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내포하는 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 나) 범죄취약지역 치안 강화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안심마을보안관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자율방범연합회 등 지역방범활동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였다.

한강공원과 같이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지역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전담공무원 증원, 방범용 CCTV 확충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원리를 적용하여 여러 안전설비(비상벨, 반사경, 로고젝터 등)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미관을 유지하며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 인식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다.

#### 다) 여성안전상담관 운영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안전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상담, 조사 후 상담, 스토킹 사후관리,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 시부터 여러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라) 지자체 및 시민과의 협력활동

서울시 자치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시민과 상호협력하며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찰에 의한 순찰과 단속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를 통해 치안을 유지하게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감시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비공식적인 범죄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방범상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가) 교통사고 예방

이륜차, 교통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교통사고 감소대응책을 발굴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 각 경찰서의 교통분야 책임자 및 교통안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안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나) 교통시설 개선사업

보행자 안전 및 사고예방 개선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 지역맞춤형 교통환경을 조성하였다.

다) 교통취약지점 환경관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어린이시설 중심으로 CCTV 및 기타 안전예방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기초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3) 주요 경찰서별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가) 서울 마포 경찰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활동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 범죄취약지역 CPTED 종합개선 사업 추진, CPTED 기반 범죄예방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실시하였다.

나) 서울 중부 경찰서

데이트 강간에 주로 악용되는 마약류 GHB를 사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해 ‘마약 진단 스티커’를 활용하였다, 현장에서 즉시 GHB 포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활용한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서울 종로 경찰서

학교예방경찰관, 사이버 수사관은 청소년들에게 도박,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버 성 착취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회복지원을 했으며, 대처방안도 교육하였다. 학교전담경찰과 사이버수사팀은 또한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취약한 범죄 유형에 대해 재점검하였다.

라) 서울 강남 경찰서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 있는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였고,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 취지 및 과정 안내, 도로교통법 개요 및 운전면허 시험 절차 안내, 예상 문제 등 교육하였다.

### Ⅲ.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조례 현황

#### 1. 자치경찰 관련 서울시 조례들

##### 가. 자치경찰 관련 법규

자치경찰 관련 현행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경찰법 )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1호, 2022. 1. 18., 일부개정]
- (대통령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시행 2021. 5. 20.] [조례 제7989호, 2021. 5. 20., 제정]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시행 2021. 5. 20.] [조례 제7989호, 2021. 5. 20., 제정]
- (법률) 경찰공무원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전부개정]
-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126호, 2020. 10. 2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시행 2021. 2. 3.]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2021. 2. 3., 일부개정]
-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6호, 2021. 8. 3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 나. 자치경찰 사무 현황

##### 1) 『경찰법』 상 자치경찰의 사무

현행 법률상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이다.

현행 경찰법 상 자치경찰사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과 범죄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현행 대통령령 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범위 등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 상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는 대통령령 제2조 제1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서울시 조례상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 전담 경찰관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 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와의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 요령 등 홍보 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실종 사전예방활동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킴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 인력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안전 보호기관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 사전방지 활동 ②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청소년 참여제도 운영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④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범죄근절 및 예방활동 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③ 학교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 홍보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 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그 밖의 경범, 주취자 등 지역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주민생활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관련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처리업무 ②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관련 보호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② 교통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2) 교통안전 시설 및 무인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관리·운영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②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③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 시설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선발·관리 등 지원 ②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공사 신고접수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접수 관리 및 안전점검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마) 버스전용차로 통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관리

	행 지정신청 처리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신청·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 통안전 및 소 통에 관한 사 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 안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를 포함 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신고처리 ② 교통안전 및 소통 관련 신고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 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 업무
	라) 정체 해소 등 소 통 및 안전 확보를 위 한 교통관리	①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③ 그 밖에 도로통제 등으로 교통정체 우려시 관련 기관의 사전대책 협의
	마) 지역 내 교통안 전대책 수립·시행	①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 교통관련 법령상 유 관기관 협의 ②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 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 리 지원	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안전대책 협의 및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교통안 전활동 지원
-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협의 및 행사장 안전관리·안전활동 지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등
- 이하 생략

#### 다) 사무국

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sup>3)</sup>

#### 1) 주요 내용

##### 가) 목적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위임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나) 적용범위

서울시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행사에 적용된다.

즉, 시장의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정 이하에 대한 파견, 전보, 복직, 휴직, 직위해제 임용권 행사, 위원회의 경감 이하에 대한 해임, 파면, 정직, 강등 임용권 행사,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사 이하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이다.

### 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sup>4)</sup>

3) [시행 2021. 7. 1.] [서울특별시규칙 제4421호, 2021. 6. 3., 제정]

4) [시행 2023. 7.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577호, 2023. 7. 17.,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표 3-2>와 같다.

<표 3-2>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	3					3
총경	1					1
경정	1					1
경위	1					1

출처: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3. 타 시·도 자치경찰 관련 조례 사례

가. 운영방식 및 조직구조

1) 타 시·도의 일반적 운영방식과 조직구조

현행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조직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일원화된 소위 ‘3 지휘감독기관과 1 집행기관(한 지붕 아래의 세 가족)’ 형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 및 감독을 받는데,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국가경찰관이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사무 등 성격에 따라 업무를 분담,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2) 제주자치경찰단의 운영방식과 조직구조

제주특별자치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2개 기관, 즉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이원적 자치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전국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88조 및 「경찰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의 제주자치경찰단

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과는 구분된다.

## 나. 사무 및 업무 분장

### 1)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

#### 가) 「경찰법」 상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경찰법」 제4조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교통에 관한 사무, 다중운집 행사 혼잡 교통과 안전 관리, 교통사고와 교통 관련 범죄,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와 관련된 수사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자치경찰의 생활안전·교통·경비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대하여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규정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수색 및 범죄 등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2) 각 시·도의 조례상 자치경찰사무 범위

각 시·도는 「경찰법」 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전국 시도자



치경찰 관련조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직무 수행

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단 사무와 업무분장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사무)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제주특별법」 제96조 의하면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4조(보호조치 등),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 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및 제12조(벌칙)를 준용하도록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주자치경찰

사무 범위 앞서 살펴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조례」 제2조 및 ‘별표’ 규정에 의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상 제주자치경찰단 사무범위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에 대하여 제주특별도지사과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다. 제주시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 1) 국가경찰과의 협약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상호 긴밀한 협력과 응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91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에 관한 사항
- 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상호 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사무를 분담할 때,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 계절별 특수성
- 중복되는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증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 수요에 대비하여 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리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중점 활동 지역 선정 및 운영
- 치안의 수요, 인력,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한 근무 시간과 근무 방법 선정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 2)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위촉한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나)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시설의 수량에 따라 위원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가능하다.

도지사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요한 행사, 도로공사 등 일시적으로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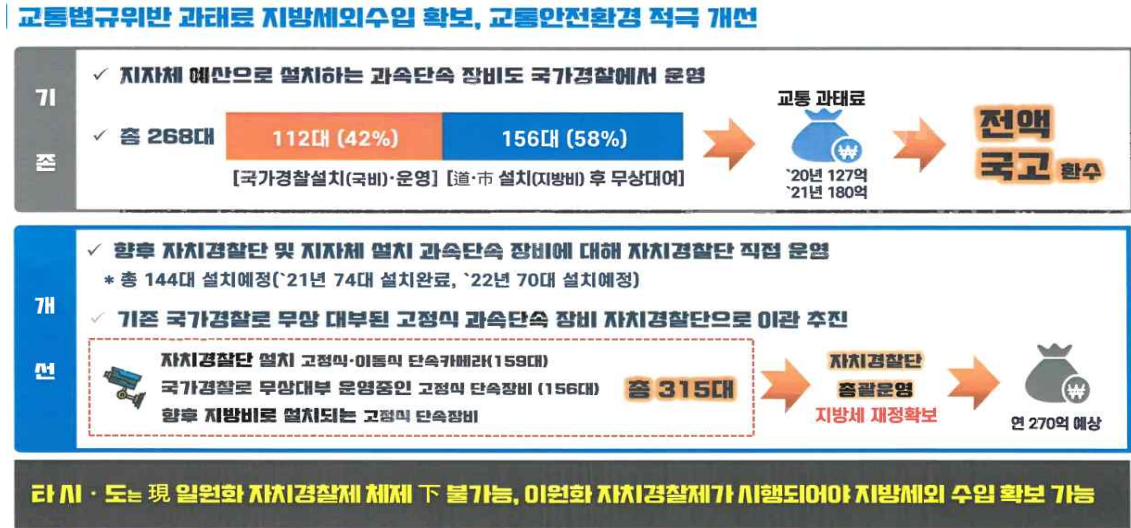
### 3) 자치경찰기마대의 설치와 운영

특화된 주민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기마대(이하 “기마대”라 함)를 설치할 수 있다. 기마대 근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기마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명예기마대를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라. 제주 자치경찰 운영의 사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보하여, 교통안전환경을 적극 개선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제주형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및 발전방안, 제주자치경찰단, 2022.

## IV.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 1.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

#### 가.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치안활동 강화'사업영역

##### 1) 민-경 협력을 기반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가) 범죄예방디자인전담팀 구성

민경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착수하여 치안, 행정, 디자인 효과의 극대화하였다. 그러나 향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 나)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사업 협력

여성·1인가구 등 주거 취약 범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 수행하였다. 실례로서 안심마을보안관사업, 안심홈세트 등이 있다.

시비 예산 편성을 요청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경찰 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치구의 치안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다) 다중 운집 지역 순찰강화

한강공원 치안 강화를 위해 순찰 강화 및 합동 단속, 물리적 시설 보완, 예컨대 CCTV, 펜스 등, 순찰대 신설 운영을 검토하였다.

지역 경찰의 인력 부족, 업무 과중, CSO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인사권 행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 연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하철 안전 강화 및 범죄 감소를 실현하고 있으나, 객관적 성과 측정과 자치구별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바) 무인점포 대상 범죄 대응 방안 마련

시설 보완, 주요 범죄 수법과 절도 예방 우수 사례(관악서, 성북서, 노원서)를 공유, 순찰 강화, 청소년 교육으로 범죄 기회 감소를 도모하였다.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객관적 성과 검증과 경찰 인력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사) 아동학대 예방방안 마련

서울시와 업무 협약, 대응 TF팀의 대응체계 마련, 전담 의료 기관 지정, 신고 절차 개선,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양육 기술 훈련,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 전문가, 전문 강사, 슈퍼비전, 멘토링을 통한 교육의 질과 효과 확보가 필요하다.

아) 여성·청소년: 불법 촬영 및 성폭력 예방

합동 점검 시행 및 합동 순찰 강화로 불법 촬영 피의자 검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담당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점검단의 필요성과 신고포상 제도 등을 통한 민-관-경의 협력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비 활동

각 자치구에서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자립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을 시행하였다. 한편, 국가·자치경찰 사물관할의 구분, 통합 시스템 구축, 시민 대상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 중장기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 TF팀 출범

교통사고 패턴 파악과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시설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안전속도 5030'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시행하였다.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대상 교육, 집중 단속 및 단속 장비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 나. '시민참여 및 지자체·유관기관 협업'사업영역

##### 1)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

###### 가) 서울시 반려전 순찰대를 초석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

대상과 주제 확대를 위해 숏폼 및 동영상 제작 공모전 등의 콘텐츠 다양화와 SNS, 카드 뉴스 제작 등의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한 젊은 세대의 공모전 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치안 유관 민간단체 및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시민, 민간단체, 자율적 방법연합회, 교통 협력 단체,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협업 및 업무 협약 체결을 하였다. 향후 강건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이 기대된다.

#### 다. '자치경찰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홍보 추진'사업영역

##### 1) 자치경찰 홍보

시민과 경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 6종(포스터, 리플릿, 엽서, 마스크 목걸이 등)을 제작 및 배포, 서울자치경찰 슬로건, 로고 및 순찰 차량 마크 부착, 누리집(홈페이지) 활용, 인지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캐릭터, 이모티콘, 행사 참여, 후속 인지도 조사 시행과 새로운 홍보 전략 및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실질적 임용권 행사

###### 가) 실질적 임용권 행사

서울자치경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령상 위임받은 모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임용권 행사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도모하고, 형식적 임용권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된다.

### 3) 재정관리체계 운영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이한 규정(법령, 조례, 지침 등), 운영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체계를 정립하여 자치경찰 예산 확보와 회계 체계 마련을 시행하였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법」에 따라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정한 예산을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에 재배정하는 체계이다.

현 체계에서 서울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각 경찰서에 예산을 분배했을 때 발생하는 통합 관리의 어려움과 각 경찰서 간 탄력적 예산 활용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자 서울경찰청에서 31개 경찰서에 예산을 재분배(재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자치경찰기금 신설 및 과태료·범칙금 지방 이양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이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의 한계

### 가.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1)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있고, 자치경찰 조직과 인력은 없기 때문이다.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인지도가 낮으면, 주민참여형 체감치안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홍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2) 일원화 모형의 법적·제도적 모순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형식적 수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도지사과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령·시스템 미비로 인해 형식적인 권한 행사에 불과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집행기능이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므로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운용체제

#### 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간의 독립적·분리된 제도설계

애초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간의 독립적, 분리된 법·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제도적인 설계가 되어 시·도지사의 책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도지사에게 의한 책임운영체제의 도입을 통해 경찰자치를 실현해서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즉,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몸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야 한다.

#### 【현행 법·제도상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권한】

- 인사 : 형식적 인사권한 행사(경위·경감으로의 승진 임용권)
- 사무 : 자치경찰위원회 중요 안건 부의
- 예산 : 예산의 수립,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나.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개선 과제

#### 1) 자치경찰인사권

자치경찰의 인사권 실질화를 통해 지휘·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도지사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인사권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찰공무원법】

- 시·도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경찰공무원법」 제5조에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중요사안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관서(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되도록 함.

#### 【경찰공무원 임용령】

-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임용권 근거 마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1항 지구대·파출소 임용권 관련하여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은 임용권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 개정



## 2) 자치경찰조직권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부서로 전환해야 한다.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지구대의 업무 관할이 시도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또 지역치안 개선과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의 한계로 나타난다.

주민 친화적인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의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맞게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부 소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경찰조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자치경찰조직권의 개선】

- 지구대 · 파출소의 자치경찰 부서 환원
-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각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 3) 자치경찰재정권

자치경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자치경찰 예산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자치경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경찰사업은 전액 시·도비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다. 이에 자치경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편성하고 서울경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함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범칙금, 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전환하고, 기타 세수 확보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국세 및 지방세 활용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자치경찰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자치경찰재정권의 개선】

- 자치경찰교부세 ·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의 지자체 이관 등

## 4) 자치경찰행정권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되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

원회의 업무가 지방자치사무가 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치경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사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사무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행정권의 개선】**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사무화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개정 추진
-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 아울러 자치경찰 인사관리 업무도 지방사무가 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치경찰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다.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방향

1) 서울시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한 지원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개정은 상위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근거해야 하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원 조례의 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의회 차원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서울시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자율방범 활동 요청과 포상,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는 조례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직접 지원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설치·운영에 관한 통합적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 3) 서울시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의 발굴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은 상위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근거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시민의 활동, 사업 발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혹은 운동을 발굴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개정을 검토한다.

둘째, 서울시(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활동을 자율적인 시민의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시민봉사서비스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개정을 검토한다.

####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 ○(사업목적)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하에 인명 및 재해구조, 환경정화 영역의 공익사업과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및 수익사업을 병행 실시하며 국가안보의식을 고양시키는 활동을 한다.

##### ○(사업의 종류)

- 다음과 같은 공익사업을 능력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가. 교통질서 확립 나. 방법순찰활동 지원 다. 환경오염 및 공해 감시 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마. 재난구조 및 복구 바. 응급환자 처리 및 인명 구조 사. 공익시설 보호 및 공공단체  
극기 훈련 지원 아. 농어촌 일손 돕기 및 경제 살리기 운동 자. 민방위 활동 및 훈련 지원 차. 안  
보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교육 및 행사

출처: (사)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해병대전우회 정관

발굴 가능한 사례를 예시해 보면, 해병대 전우회의 경우, 사업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교통질서 확립, 방법순찰활동 지원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서울자치경찰의 보조적 역할이 수행가능하다.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들을 발굴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라. 국가경찰 사무의 자치경찰 사무화

#### 1) 국가경찰사무의 서울 자치경찰 사무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서울시가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규제 등의 사무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규제 등에 대한 사무가 수행되지 않는다. 이는 재정주체와 운영주체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과속단속 장비단속 장비 등)도 국가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 운영에 대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사례처럼,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칭)을 서울시 자경찰위원회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타 시도 및 해외 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 1. 타 시도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한계

#### 가. 부산시 자치경찰

##### 1) 주요 정책 및 사업

###### 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지방행정과 자치경찰행정을 연계한 시책발굴,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였다. 3개 기관 즉, 시, 경찰청, 교육청으로 함께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하고, 최고액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시 치안정책의 예산 확충과 부산광역시·부산시경찰청·부산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민의 치안 요구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안문제를 자율적으로 발굴, 해법을 찾는 ‘치안리빙랩’ 도입,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15분 도시 SMART(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시범 추진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두었다.

###### 나) 개방형 실무협의회 운영

시민의 참여를 높여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자치경찰제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현안·심의·안전 등의 처리 속도를 높였다.

###### 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자치경찰제도 운영,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부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하였다.

라) 남포도매업 차량 주정차 시간 연장

최근 이슈였던 ‘남포도매업 차량의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시행’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부산경찰청, 일선 경찰서는 다중통행지역 및 취약지 로고 라이트 설치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홍보 성과를 거두었다.

마) 종합

부산지역의 주요 치안문제와 자치경찰의 역할을 종합해 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부산지역의 주요 치안문제와 자치경찰의 역할

지역특성	생활치안 현안문제	자치경찰 역할
여름철 해수욕장이 많아 피서객이 집중	매년 여름철 인구집중으로 몰카, 절도·폭행·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 피서철 특별집중 단속 및 순찰 -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 해안가 사고 긴급 대응 - 교통관리 및 해수욕장 경비

2) 성과 및 한계

지역주민에게 자치경찰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 자치경찰제 방송 기획보도, 홍보영상 방송, 누리소통망을 통한 홍보, 자치경찰소통단 운영, 시민 참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지만, 자치경찰의 시민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 담당 경찰관은 그대로 국가경찰관 신분이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치경찰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향후, 신분의 변동과 더불어 순찰차량, 제복 등 고유의 자치경찰로 변화하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을 책임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하며, 과태료·범칙금 등의 지방이양으로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 밀착형 치안정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

나. 대전시 자치경찰

## 1) 주요 정책 및 사업

### 가) 피해자 보호 TF 신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서장을 중심으로 기능과 관할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지구대-경찰서-시경찰청'의 3중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신고에는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 코드를 부여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22년 10월말 기준 112에 신고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9,523건으로 2021년보다 9.3% 증가했고, 최고 대응 수준인 code0 지정 건수는 2021년 동기간 대비 91.6%로 대폭 늘어 음지에 머무르던 범죄를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임시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한 결과, 가해자 분리가 2021년에 비해 27.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위험도별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험도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도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등급을 나눠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하였다. 조치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1년간 무상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였다.

###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역 기업들의 지정 기탁 기금을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보호시설 환경개선, 가해자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보호·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산재된 피해자 보호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필요성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연계 종합안내도'를 자체 제작·배포하였다.

## 2) 성과 및 한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 때문에 지역민도, 현장 경찰관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국가경찰사무는 경우 경찰청장이 수행하고, 수사사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행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지만 실제 사무를 수행하는 건 기존 국가경찰이므로 경찰청장의 통제 아래 있는 시·도경찰청이 경찰서를 거쳐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지휘·감독하는 구조로 결국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한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전은 과학의 도시에 맞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을 펼치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치안 구현을 위해 대전과학치안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비행 행위 근절을 위해 근린공원 내 피지마 스마트 AI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찰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어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가 범죄 데이터 활용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과학 치안 구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 다. 인천시 자치경찰

### 1) 주요 정책 및 사업

#### 가) 자치경찰 10대 과제 추진

2021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피학대아동 보호, 학교폭력 예방을 목표로 10대 과제를 추진했다. 등하굣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를 배치하고, 스쿨 존 시설 개선, 통학버스 합동 점검 등을 벌였고, 피학대아동 보호시설 6개소를 마련하고, 반복 신고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보호와 예방에 주력하였다.

#### 나) 여성의 안전을 주력사업 선정

최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여성 안심 치안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2년에는 여성의 안전을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3대 목표 8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여건을 꼼꼼히 분석해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여성안심귀갓길을 보완, 확충하였다. 또한, 불법촬영 통합점검단은 2021년부터 공중화장실 1,516곳을 전수조사 후 점검을 이어갔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부부 상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 2) 성과 및 한계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시책들을 시행하고 치안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1호 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통해서 아동학대 112 신고는 14.1%로 줄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1%는 감소하였으며,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19.2%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분리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민 친화적인 실질적 이원화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여성, 아동 분야 범죄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 왔지만 시민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어서 개선논의가 필요하다.

〈표 5-2〉 인천지역의 주요 치안문제와 자치경찰의 역할

지역특성	생활치안 현안문제	자치경찰 역할
국제 공항과 항만의 요충지로, 대규모 산단이 위치하며 화물차 통행이 빈번	매년 화물차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 특히 주거지 내 사고 비중 높음	- 화물차 교통단속 강화 - 실시간 통행 관제/대응 - 주민 안전관리 강화 - 신속 사고대응

## 2. 해외 사례분석

### 가. 영국

#### 1) 런던 경찰의 자치경찰 전환(2000년)

2000년에 국가경찰이었던 런던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되어 광역단위 자치경찰체제를 확립,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안전과 범죄예방에 관한 관할구역 내 일반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찰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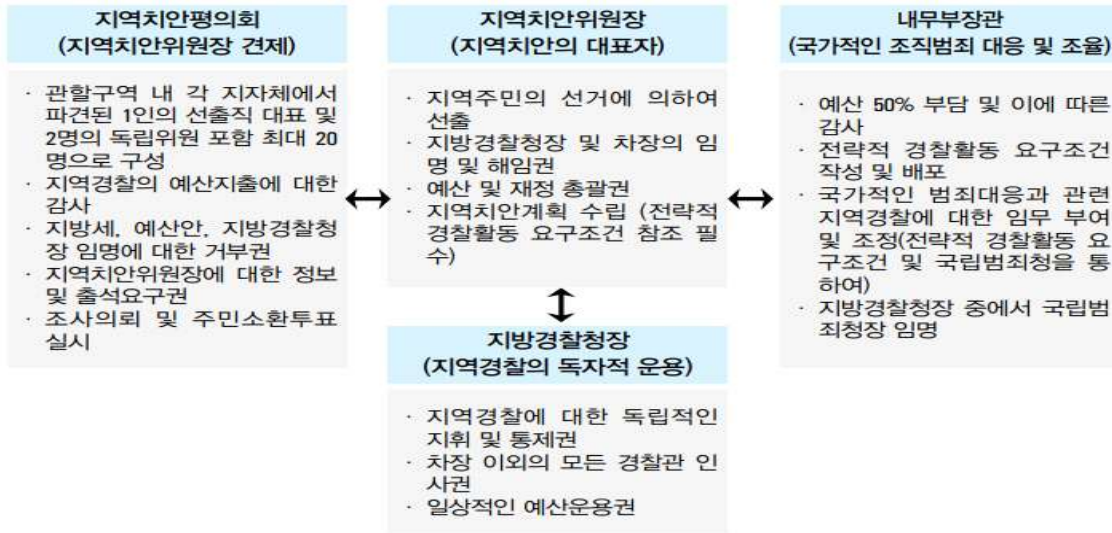
자치경찰의 운영에 있어서는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2011)의 제정에 따라 큰 변화 맞았다.

영국경찰은 1964년 경찰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과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이 관여하여 운영하는 삼원체제가 설정된 후, 계속해서 운영해 왔다.

1994년 「경찰 및 치안법원법」,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한 2002년 「경찰개혁법」을 거치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치안 정책에 지역 특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에 근거하여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이 각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관여, 운용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그림 5-1〉 영국 자치경찰 운영체계



출처: 최천근,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 Special Issue, 2018: 31.

지역치안위원장은 지역 치안책임자로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선출된 지역치안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한다.

지역치안위원장의 견제장치로 각 지역에 지역치안평의회 즉, Police and Crime Panel을 운용하여, 지역경찰 예산안, 지방경찰청장 임명 거부권 행사, 예산지출 감사를 한다.

영국의 자치경찰은 선출된 지역치안위원장이 주민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지역치안평의회는 지역치안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하여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 나. 일본

### 1) 이원화된 절충형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과 도도부현 단위의 자치경찰로 이원화된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일본은 운영하고 있다. 1947년 구경찰법의 제정으로 인구 5,000명 이상의 시정촌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4년 신경찰법 제정으로 현재와 같은 도도부현 경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활동을 포함한 모든 경찰사무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관리 하에서 도도부현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경찰청은 국가경찰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범죄감식, 통신, 경찰교육, 범죄통계 등을 수행하며, 국가적 차원의 치안, 기술적으로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관련된 사무의 관장, 도도부현

경찰행정에 대하여 조정·통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 2) 일본 자치경찰의 특징

### 가) 중앙

정부는 내각총리대신의 소할 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한다.

### 나) 지방

도도부현 지사 소할 하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영국과 같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받지 않지만, 국민의 대표를 통한 통제라는 간접적 통제방식이다.

공안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명은 국회 양의원 혹은 도도부현 의회 동의를 필요하다.

국무대신 혹은 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며, 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서 경찰이 운영, 활동한다.

## 다. 미국

### 1) 연방 및 주경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은 연방, 주 경찰과 독립적인 관계이다. 자치경찰은 해당 지방정부의 경찰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경찰권을 행사한다. 주 정부 법률이나 지방정부의 현장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있지만, 자치경찰은 법집행과 공공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경찰 서비스 제공 등이 주 임무이다.

### 2) 자치경찰의 조직·인사·감독권

자치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정부가 가지며, 주 경찰은 자치경찰에 대한 보편적 지휘·감독권이 없다.

### 3) 자치경찰의 예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치경찰 예산은 경찰조직이 속한 지방정부로부터 받는다. 또한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필요한 자치경찰 예산을 충당한다.

주와 지방정부는 자치경찰 예산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연방정부는 법무부의 사법프로그램 담당부서(Office of Justice Programs)에 의해 자치경찰 법집행 관련 예산을 보조한다.

#### 4) 보안관 경찰조직

카운티 단위 행정구역에서 경찰권 행사 조직은 보안관이다. 자치경찰이 시작된 때부터 존재해 온 가진 조직이다. 보안관의 임무는 해당 관할 구역내의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한 소장 송달과 영장 집행, 피고인 호송, 카운티 교정시설 관리 등을 수행한다.

처음 보안관 임무는 발생한 범죄의 대응 성격이 강하였다가, 지금은 순찰과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시행 등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경찰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카운티 보안관은 시 단위 자치경찰 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의 순찰을 수행 등 카운티 지역의 보편적 관할권을 수행한다.

미국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 카운티 보안관은 선거로 선출, 임명되며, 임기는 2년~6년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카운티 단위로 조직된 경찰조직(County Police)이 설립되면서 카운티 보안관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5) 시 경찰

시 경찰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경찰은 주의 법률에 따라 통제 받지만, 자치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인정되어 관할 구역내에서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시는 시장 소속하에 경찰위원회(Board of Police Commissioners)를 설치하고, 위원들의 합의제로 경찰을 관리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일부 주는 시장 또는 시의회가 경찰책임자를 선임하고, 경찰 전반의 책임을 지고 지휘·감독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선출직이 아니므로, 시 경찰책임자는 임명권자에 의해 해임할 수 있으며, 4년~5년의 고정된 임기로 임명되고, 계약을 맺는다.

#### 6) 종합

미국의 자치경찰은 연방과 주정부 경찰조직과는 달리 지방분권적 형태로 조직되고, 경찰기관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 행정조직과는 대칭을 이룬다.

자치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정부가 가지고, 주 경찰은 자치경찰에 대한 보편적 지휘·감독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권한의 독자성은 견제없이 자유롭게 행사되지 않는다. 자치경찰의 경찰권 행사는 다양한 입법, 사법 통제의 대상이며, 자치경찰 또한 헌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통일된 법집행을 위한 다양한 통제 장치가 있다.

예컨대, LA(로스앤젤레스)시 경찰은 적법성, 통일성을 가진 경찰권 행사를 위

하여, 헌법의 부합성, 전문적 경찰활동의 전문성 표준 부서(Professional Standards Bureau), 그리고 헌법적 활동과 정책 부서(Office of Constitutional Policing & Policy)를 운영하며, 연방 및 주정부는 자치경찰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예산 보조로서 자치경찰의 정책 방향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 VI. 서울형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

### 1. 서울형 자치경찰 모델(안)

#### 가. (제1안) 부분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 1) 개요

##### 가) 조직 분리

국가경찰조직은 경찰청 소속하에 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대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조직은 서울시장 소속하에 서울시경찰위원회, 그 관리하에 서울시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파출소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 나) 경찰공무원 신분

국가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자치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다) 사무수행

국가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 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

서울시장이 보유한다.

##### 2) 조직

##### 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이를 위한 신청사의 마련이 필요하다.

##### 나) 자치구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바, 국가경찰서 재편에 따른 유휴 기존 경찰서는 활용도 가능하지만, 신청사 마련이 필요하다.

다) 지구대, 파출소

순찰대로 활용 가능한 기존 지구대 파출소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시 자치경찰로 일부 이관하는 바, 대략 40~60% 정도 이관한다. 나머지는 새로운 지구대, 파출소 청사를 신설한다.

3) 사무

가) 자치경찰사무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특별사법경찰사무, 일부 수사 사무가 된다.

나) 수사권

자치경찰사무 관련 일부 수사권을 부여한다.

4) 신분·임용

가) 자치경찰관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이관한다. 서울시 경찰청 이하 자치경찰사무수행 경찰관을 이관하는 바, 2019년 홍익표 의원 발의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40%를 이관하는 것으로 했다.

나) 경과규정

지방직 전환 후 국가직 복귀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둔다.

다) 서울시장의 임용권

자치경찰관의 전반에 대한 임용권을 보유한다.

라) 자치경찰관의 채용)

서울시가 채용의 주체가 된다.

마) 기관장의 임명

자치경찰본부장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제청,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각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본부장이 임명한다. 지구대, 파출소장은 자치경찰대장이 임명한다.

5) 지휘감독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자치경찰본부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본부장은 이하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 6) 재정

출범 초기는 국가가 부담하고, 이후 국가재정을 이관한다. 자치경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등을 신설한다.

### 나. (제2안) 전면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 1) 개요

##### 가) 조직 이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서울시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이관한다. 이외 신설 및 이관은 따로 없다.

##### 나) 경찰공무원 신분

국가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자치경찰관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 다) 사무수행

국가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 사무수행 즉, 정보, 외사, 보안, 전국적 사건 등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 사무를 제외한 모든 서울시경찰청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 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

서울시장이 자치경찰공무원 전반을 임용한다.

#### 2) 조직

##### 가) 서울시

현 국가경찰조직 가운데 서울시경찰청 이하 즉, 서울시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한다. 이외 신설 및 이관은 없다. 그리고 청사 마련이 불필요하다.

##### 나) 자치구

도입이 필요 없으며, 자치구별 경찰서 전부를 이관한다. 따라서 청사 마련 불필요하다.

다) 지구대, 파출소

서울시 경찰청, 경찰서, 산하 지구대 파출소 전부를 이관하고, 청사 마련은 불필요하다.

3) 사무

가) 자치경찰사무

원칙적으로 서울시경찰청 경찰사무 전체가 자치경찰사무가 된다. 다만, 정보경찰, 외사경찰, 보안경찰, 전국적 규모의 사건 등에 대한 사무는 국가경찰사무, 그 외 모든 사무(일반수사 포함)는 자치경찰이 수행한다.

나) 수사권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수사사무는 제외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4) 신분·임용

가) 자치경찰관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의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시경찰청 이하 경찰관 대다수를 이관한다. 국가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은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나) 경과규정

신분전환 미희망자는 임용권을 서울시에 위임한다.

다) 임용권

서울시장은 자치경찰관 전반 임용권을 보유한다.

라) 채용

국가가 국가경찰공무원을, 서울시가 자치경찰공무원을 일괄 채용한다.

마) 기관장의 임명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를 동의를 얻고,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서울시경찰청장을 임명한다.

5) 지휘·감독권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경찰청장이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경찰서장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지휘감독한다.

6) 재정

국가재정을 이관한다. 그리고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세원 이관을 확대한다.

다. (제1안) 모델, 현행 모델, 제2안 모델간의 비교

〈표 6-1〉 모델의 구체적 내용

		(제1안) 《부분 이원화 모델》	(현행 모델) 《일원화 모델》	(제 2 안) 《전면 이원화 모델》
조직	시도	자경위,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신설 (청사 마련 필요)	자경위 신설 (기타 신설·이관 無)	자경위 신설, 시 경찰청 이하 이관 (기타 신설·이관 無)
	시군구	자치경찰대 설치	미도입	미도입
	지구대 파출소	시 일부 이관 (40~60% 이관)	이관 없음 (지휘 불가)	시 전부 이관
사무	자치경 찰사무	생안, 교통, 지역경비, 특사경, 일부 수사	생안, 교통, 지역경비 (수사는 사실상 제외)	시·도경찰청 경찰사무 전체 (정보, 외사, 보안, 전국적 사건 등 제외)
	수사	자치경찰사무 관련 일부 수사권 부여	수사권 없음 (국가수사본부 전담)	자치경찰사무 관련 수사권 부여 (단, 자경위는 포괄적으로 지휘)
신분 · 임용	자치 경찰관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이관원칙 (시경찰청 이하 36%)	부존재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이관원칙 (시경찰청 이하 대다수)
	경과규 정	부존재 (지방직 전환 후 국가직 복귀 가능)	부존재	신분전환 미희망자는 임용권 위임
	시도 임용권	자치경찰관 전반 임용권 보유	일부 임용권 수입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	서울시가 자치경찰관 전반 임용
	채용	시 채용	국가 채용	국가·시 일괄채용
	기관장	시장이 임명 (자치경찰본부장)	대통령이 임명 (시·도경찰청장, 자경위 의견수렴)	시장이 임명 (시경찰청장)



지휘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본부 이하 조직	자경위→시·도경찰청장	자경위→시경찰청장(원칙), 시경찰청 이하(예외)
재정	출범초기 국가부담, 국가재정 이관(교부세 신설)	국가재정 이관 (국고보조금→세원 일부이관)	국가재정 이관 (교부세 신설, 세원이관 확대)

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

1) 윤석열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2022년 4월 27일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 강화를 선정하고, 이에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검토하였다.

2022년 7월 22일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 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모델을 마련하고, 제주, 세종, 강원도에 시범실시하며, 성과분석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2일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국내 자치경찰지원과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을 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 범정부 체계를 구성하고, 제주, 세종, 강원에서 시범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23년에는 3개 시도 특별법을 동시 추진하고, 2024년에는 제주 세종 강원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해, 3개 시도의 시범실시 성과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2025년에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경찰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2026년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 9월 6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대학 개선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여,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였다. 이 위원회는 현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sup>5)</sup>.

5) 제주형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및 발전방안, 제주자치경찰단, 2022.

## 2) 진행 사항

### 가)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및 권고안 논의<sup>6)</sup>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 실시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시범실시 기간 중에도 치안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나) 자치경찰 이원화<sup>7)</sup>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또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sup>8)</sup>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3) 권고안 미확정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도 위원 간 경찰대 관련 개혁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전북을 포함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 실시 정부 권고안이 확정되지 못하였다.<sup>9)</sup>

## 2. 모델(안)별 조직구조와 비용 추산

### 가. (제1안) 부분 이원화모델

#### 1)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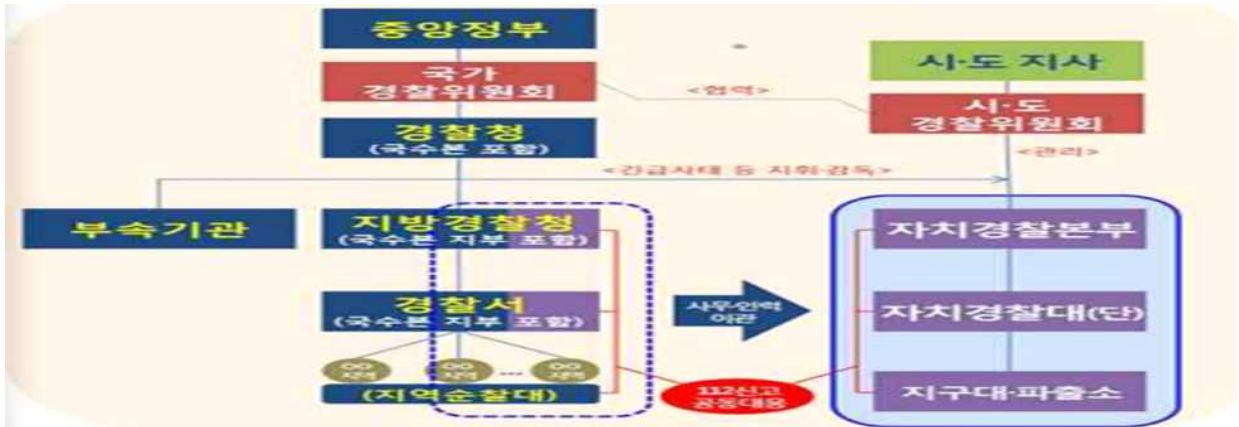
6)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11차 회의록(2023.05.02.)

7)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10차 회의록(2023.04.11.)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

9) 전북일보 보도내용, 2023.05.23.

〈그림 6-1〉 부분 이원화모델의 조직구조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이해, 2021.

가) 서울시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파출소 조직 운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결정 등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회의 운영 규칙 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자치경찰본부의 자치경찰 사무처리를 위한 직제표, 부서별 업무 분장표 확립이 필요하다. 서울시 각 자치경찰대 관할구역의 치안수요 등을 반영한 최적의 설치·운영 방안 및 조직도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관서위치, 관할구역, 인력·차량배치, 근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2) 도입 단계별 구분

가) 1단계 서울시 자치경찰본부 설치

서울시청 및 부속건물 공동이용으로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겠지만, 물리적 공간부족 시 타기관 청사 등 임차가 필요하다.

나) 2단계 서울시 각 지역별 자치경찰대 설치

우선 일선 경찰서 본관을 공동 이용하되, 필요시 임차 등 국가경찰과의 업무를 연계한 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권역별 설치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경우, 관서 청사의 신설 배치방안을 마련한다.

다) 3단계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이관

국가경찰이 관서별 확대된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의 재조정 이후,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나머지 지역은 신설한다.

3) 소요 비용 추산

단계별 시행을 가정하고, 제1안 모델 시행시 소요비용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관인력 추정 산식

$$(서울청 인력 + 경찰서 인력) \times 40\% + (지구대파출소 인력) \times 70\% \\ (8,251명 + 10,885명) \times 40\% + (10,561명) \times 70\% = 15,047$$

나) 이관인력 추정산식의 근거

서울청과 경찰서의 자치경찰부서 비중 기준 및 홍익표 의원안 기준을 40%로 하였다.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 수행 사무의 70% 이상이 자치경찰사무이며, 국가경찰의 순찰대 설치시 소요인원을 전체 인력의 30%로 추정한다.

따라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서울시 경찰인력 29,697명('2021년 12월기준)의 50.6%(15,047명)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관 인력의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이관부서의 인력을 기준으로 추산한다.

〈표 6-2〉 연도별 서울시 경찰인력 현황

구분별(1)	구분별(2)	2019	2020	2021
서울경찰청	소계	7,245	8,110	8,251
서울경찰청	서울청	2,392	2,502	2,517
서울경찰청	직할대	4,853	5,608	5,734
경찰서	소계	21,521	21,250	21,446
경찰서	본서	10,945	10,741	10,885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10,576	10,509	10,561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자치경찰 백서(2022)

다) 도입단계별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의 소요비용 추산 방식

자치경찰의 조직구조가 결정되고, 직위가 결정되면, 계급별 이관인력이 결정된다. 자치경찰의 계급구조와 직위별 계급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2가지 사항을 근거로 계급별 이관인력을 고려한 소요 비용을 추산하여 제시하면 〈표 6-3〉과 같다.

〈표 6-3〉 소요 비용 추산의 기본 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단계 (Y년)	제2단계 (Y+1년)	제3단계 (Y+2년)	비고
이관인력	5,015명	5,015명	5,015명	
인건비				* 계급별 이관인력이 결정되어야 함.
제복비				
장비비				
시스템·통신망 설비 구축비				

\* 총 서울시경찰청 소속 총 인원 : 29,697 명

\* 총 자치경찰이관 인력: 15,047명

\* 연차별 자치경찰이관 인력 총원(총 이관인력÷3): 15,047÷3 = 5,015명

\* 홍익표의원안에 따르면 이관인력의 비율은 국가 60%, 자치 40%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서울시 부분적 이원화 모델은 국가경찰의 순찰대를 설치하는 가정에 따라 지구대와 출소의 이관인력을 7%로 하고, 나머지 30%는 순찰대로 존치한다는 가정으로 추정함. 결과적으로 국가 50%, 자치경찰 50%의 비중으로 추정함.

자치경찰본부는 신설하는 경우와 서울시 기존의 건물 및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산한다.

경찰관서별 청사 비용 추산은 치안 수요 및 급지 등을 감안하여 비용을 산출하고, 자치경찰대의 경우, 신설하는 경우와 리모델링(기존 경찰서와 공동 사용포함)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산한다.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의 경우, 기존 국가경찰이 사용해 온 건물과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추산한다.

비용추산의 기본 틀은 〈표 6-4〉와 같다.

〈표 6-4〉 비용추산의 기본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방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비고
현재청사 (개소) 신설						
리모델링						* 기존 국가경찰 시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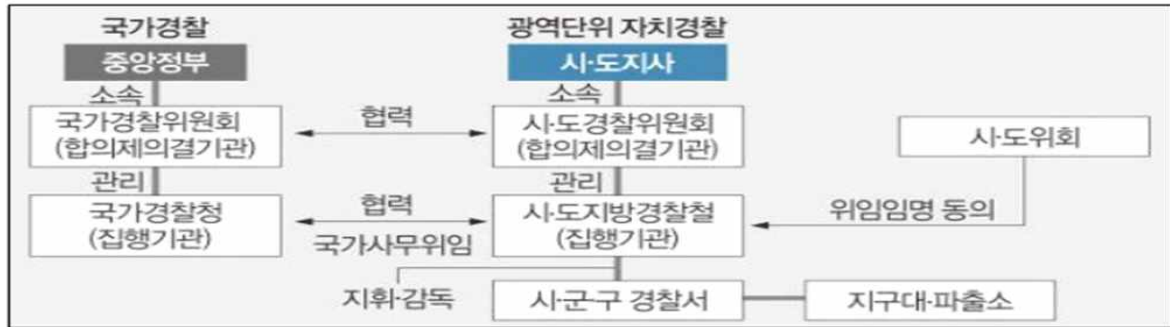
기타 자치경찰 청사 확보 방안으로 국가기관, 서울시 등 시내 관공서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다.

재원조달 방안은 지역 특화형 지방세 재원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의 법적 근거 등에 따른 재정지원 당위성 확보한다.

나. (제2안) 전면 이원화모델

〈그림 6-2〉 전면 이원화모델의 조직도



출처: 신경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서울시연구 제22권 제1호, 2021.3 :pp.39~71

1) 조직 구조

현행 국가경찰 조직 중 경찰청만을 국가경찰로 남겨 두는 형태이다. 즉, 시장 소속하에 자치경찰위원회→시경찰청→경찰서를 두는 형태이다.

2) 인사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에게 부여하고, 시경찰청장은 시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경찰서장은 시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되, 필요시 시자치구청장과 협의한다.

자치경찰은 시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현행 시경찰청을 자치경찰로 그대로 이관하고, 신규채용을 최소화한다. 단, 일괄적인 전환이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경우, 시장이 지휘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1단계 국가공무원 유지→ 2단계 지방공무원화를 검토한다.

3) 소요 비용 확보 방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세원조정 전까지 현행 시경찰청 예산을 자치경찰에 재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국가경찰 건물, 장비 등을 이관한다.

## Ⅶ.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 1.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및 규제 관한 이관 방안

#### 가. 현행 법령의 검토

##### 1) 현행 도로교통법

###### 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규정

특별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기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6조(신호기)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특별시장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을 시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그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 나. 현행 법령의 개정 방안

##### 1)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가 지방정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필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신호기의 설치권자에 재정주체인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설치권자가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제6조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신호기)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필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과 더불어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을 지방정부로부터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 이 부분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접 수행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 제86조의 2(업무조정 및 협의·조정) ① 법 제86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업무 및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업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표 7-1〉 도로교통법령 신규조문표

도로교통법령	현행	개정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p>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p> <p>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p>	<p>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접 수행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p> <p>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이하 생략)</p> <p>제86조의 2(업무조정 및 협의·조정) ① 법 제86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업무 및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업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p>

	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이하생략)	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신호기)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설치방안

1)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가)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sup>10)</sup>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등 관련 권한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3. 7. 21.]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7. 21.]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우선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사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신호기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7. 21.]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sup>11)</sup>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전문성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23.]

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시설의 수량에 따라 위원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제주특별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시설의 수량에 따라 위원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5조제4항에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중요한 행사나 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4.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⑧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자치경찰단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서울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방안

가) 현황

① 관련 법령

관계 법령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
- 위의 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함.

위와 같이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된다.

② 현행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은 시행규칙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근거로, 서울경찰청이 행사하고 있다.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편성하고 서울경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함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9조(위임규정) ① 운전면허시험·정기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도로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교통안전 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교통안전관리 사무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하

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조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③ 설치방안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직접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칭)의 큰 틀을 구성하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제 모델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④ 향후 과제

현재 서울시는 교통시설의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 담당하고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는 교통사무와 관련한 자치경찰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과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구성·위원의 임기·위원장의 직무·회의의 형태 등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 모델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개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 2. 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방안

### 가. 현행 법령상 자율방범대 등 지원의 주요 내용

#### 1) 경비 등의 지원

서울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방범대, 그리고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자율방범대원의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가입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서울특별시자치시장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둘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셋째,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이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한다.

3)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서울시 관할 구청장은 구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둘째,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셋째,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이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한다.

4)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서울시장은 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둘째,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셋째,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이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은 해당 서울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현황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역량강화 및 활동장비 지원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 방범순찰 활동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의 각 동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자치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는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2월에 설립하였고, 2011년 3월 21일에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조직은 서울시 단위는 자율방범연합회 1개, 자치구 단위의 연합대 30개, 그리고 동단위의 방범대 454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회원은 10,212명(23.4월 기준)이다. 주요활동은 지역방범 봉사활동, 기타 경찰업무 협조 등

이다<sup>12)</sup>.

#### 6) 마을안심보안관 제도와 비교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시가 2021년 시범사업으로 안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 및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안심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2022년에는 활동구역 15개 선정하여 63명의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을 위한 최종예산(1차 추경 예산 포함)은 18억원이고, 2023년에는 활동구역을 15개에서 20개, 보안관을 63명에서 8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보안관 인건비로 19억3천5백만원, 보안관 초소운영, 교육, 장비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sup>13)</sup>.

자율방범대 활동 예산 지원에 대하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와 안심마을보안관의 차이는 자율방범대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이고, 안심마을보안관은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자율방범대의 박탈감과 자괴감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방안

#### 1) 제1안<sup>14)</sup>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및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첫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둘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셋째,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넷째,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다섯째,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2) 제2안<sup>15)</sup>

1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 09. 06.

13) 2022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 3. 29.

14)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 2023년 07월 19일)의 내용 참조.

15)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2023년 08월 02일)의 내용 참조.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 지원

둘째,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셋째,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넷째,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제1안과 2안의 비교 분석

〈표 7-2〉 자율방범 활동 지원 방안의 비교

	취지	내용	비고
제1안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포상, 경비 등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경비 지원
제2안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가 제정·시행중인 조례를 상위 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자율방범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1.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 지원 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3.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비 지원

#### 가) 취지

제1안과 제2안은 모두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법령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 포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

#### 나) 주요 내용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방범활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제1안은 자율방범활동 등의 비용인 경비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2안은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하여, 경비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각각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가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사업비 지원의 경우에도 어느 범위까지 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 4)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 가) 경비 등 지급

첫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둘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셋째,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넷째,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다섯째,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 나) 사업 등 지원

첫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사업활동을 위한 지원<sup>16)</sup> 둘째,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셋째, 자치구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넷째,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 다) 한계

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한 경비의 지원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는가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활동비, 사업비 등의 지원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법의 해석 여하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활동비를 경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활동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16)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2. 7. 25.: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행정국(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자치협력과)로 업무가 2022년 1월 1일 이관되었음.

### 3. 서울특별시 통합 자치경찰 조례 제정 방안

#### 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관련 법령의 조사 분석

#####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관련 법령 규정 분석<sup>17)</sup>

###### 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조직, 운영과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으로써 그 효력 면에서 제주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역적 특별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여건, 역량, 재정 능력 등을 고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 나) 특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을 두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주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과는 구별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단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한다.

도지사의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권 보장과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서 이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관련 조례 분석<sup>18)</sup>

###### 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첫째,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내용,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치경찰기마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 나) 타 시도와의 차이점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 체제 구축과 협력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시사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운영을 분리하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함으로써 치안 공백을 감소시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 제주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자치도법)

18) p. 00 참조

자치도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 사무 분담과 근무 시간 및 근무 방법 선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집회, 시위 및 다중운집 행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적극 수용 및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본다.

## 나. 서울시 통합 자치경찰 조례 제정 방안

### 1) 개요

#### 가) 전제조건

서울시 자치경찰의 인사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 나) 기본 방향

서울시 자치경찰의 기본원칙과 임무, 사무,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기존의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그 내용을 담아 단일 조례로서 제정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경찰간의 연계사무 발굴을 통해 연계사무 수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안의 내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자치경찰의 기본 취지에 대한 선언

둘째, 서울자치경찰의 소속과 임무, 조직에 대한 규정

셋째, 서울시장의 책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 등 규정

넷째, 서울자치경찰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기본 틀 규정

다섯째, 서울자치경찰의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행정권 등에 대해 규정

여섯째, 서울시 자치경찰 인력의 확보와 신분에 대해 규정

일곱째, 서울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규정

여덟째,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

#### 나) 서울시와 자치경찰 간의 연계사무 수행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① 건축 및 도시계획행정과의 연계사무

각 지역의 건축 및 도시 계획행정과 자치경찰의 연계가 하나의 주요 연계 사무로 수행되어야 한다. 건축 및 도시계획행정과 자치경찰간 연계로 구청별로 설치

된 도시 안전통합센터, 주차장의 범죄안전관리 등을 조례와 규칙에 포함시킨다.  
또한 범죄위험 진단, 범죄영향평가 등의 유형으로도 확대하여 연계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 ② 교통행정과의 연계사무

교통 관련 사무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교통관련 사무에 대한 부담도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시장 소속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활동, 치안을 관리하고 책임짐으로써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강화, 발전시키도록 한다.

또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립하므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통합조례에 포함시킨다.

#### ③ 보건행정과의 연계사무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연계 사무를 발굴하여 포함시킨다. 실제 충청남도과 제주도 등을 비롯한 다수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있다. 주취자·정신질환자, 마약·약물에 대한 경찰의 제압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의료·보건 차원에서 지속적 통합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에 보건 의료진을 연계한 특별한 팀 구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통합조례에 포함시킨다.

#### ④ 사회복지행정과의 연계사무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사무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활용으로 연계 방안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민주성 정단성 등에 근거하여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복지 연계사무에서 다양한 정책 및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합조례에 반영한다.

### 3) 향후 과제

#### 가)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

자치경찰의 인지도가 낮으면, 치안행정을 수립, 운영 등 자치경찰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인력을 충원하여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 서울자치경찰의 통합 기본조례의 제정은 한계가 있다.

#### 나) 자치경찰인사권 실질화와 지휘·감독의 실효성 확보



자치경찰인사권 등 실질화를 통해 지휘감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임된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법령을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상위 법령 상의 한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제한을 받는 경우, 통합조례의 제정이 불가능하다. 향후 법령의 제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서울자치경찰의 안정적 예산 확보의 한계

서울자치경찰의 독자적인 자치경찰 재정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서울자치경찰의 통합조례의 제정은 한계가 있다. 안정적 예산확보 이루어져야 한다.

4. 서울시 자치경찰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가.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서울시 이관

1)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검토

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지방세외수입 확보<sup>19)</sup>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과속단속 장비도 국가경찰에서 운영하였다. 즉, 기존 총 268대에서 ‘2020년 127억’, ‘2021년 180억’의 교통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단 및 지방자치단체 설치 과속단속 장비에 대해 자치경찰단이 직접 운영하고, 2022년 기준 총 144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고, 기존 국가경찰로 무상 대부된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자치경찰단으로 이관을 추진하였다. 이에 총 315대의 단속 장비를 자치경찰단이 총괄 운영하고, 지방세 재정으로 확보하고 있다. 즉, 연 270억 예상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경우, 지방세외 수입확보가 가능하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sup>20)</sup>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는 교통단속(도로교통법 속도 및 신호, 통행제한 위반)을 위하여 필요하기

19) 제주형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및 발전방안, 제주자치경찰단, 2022.

20) 시행일자 : 2023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http://jmpfine.jeju.go.kr/> 2023. 08. 11)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표 7-3>과 같다.

<표 7-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영구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ITS 관제센터)

## 2)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서울시 이관 방안

### 가) 기본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예산으로 이관한다.

### 나)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이관

서울경찰청 관리 과속단속 장비에 대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고,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설치를 추진, 운영한다. 아울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또 기존 국가경찰로 무상 대부된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을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과속단속 장비에 대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운영한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총괄 운영하고 지방세 재정을 확보한다.

## 나. 연계사무의 발굴과 자치경찰사무 재원 활용

### 1) 기본 방향

자치경찰의 출범으로 시·도의 다양한 부서와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필요한 사무에 자치경찰을 투입하여 작용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안전과 치안 유지는 시민의 지지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울시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핵심 시정목표로 설정한다.

서울시의 건축 및 도시행정, 교통행정, 의료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교육행정 등 다양한 연계사무 발굴을 통하여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자치

경찰 예산으로 확보해 나간다.

## 2) 주요 내용

### 가) 연계사무의 발굴과 관련 예산의 확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은 치안서비스의 또 다른 효과로 나타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는 궁극적으로 서울시 종합행정력의 향상 차원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는 그 필요성과 아울러 지방행정의 변화를 이끌어갈 이슈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종합행정의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 이념에 맞도록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한 치안행정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연계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치안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 단위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나) 연계 사무의 유형

서울시와 협업 가능한 연계사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건축 및 도시계획행정과의 연계사무

둘째, 서울시 교통행정과의 연계사무

셋째, 서울시 보건행정과의 연계사무

넷째, 서울시 사회복지행정과의 연계사무

## 다. 자치경찰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

### 1) 서울시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

자치경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자치경찰특별회계 예산을 설치 운영한다. 자치경찰 예산이 타 부서의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담보<sup>21)</sup>하기 위해 필요하다. 2022년 자치경찰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일부 가능하게 되었다.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사무 관련 교통 범

21)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2. 7. 25.

칙금 지방 이양 등이 필요하다.

## 2) 목적세의 신설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고, 현재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재정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있다<sup>22)</sup>.

따라서, 자치경찰도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균등한 지역 치안 행정을 담보할 수 있다.

## 라. 향후 과제

서울시 자치경찰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예산 운영체제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시장에 의한 책임운영체제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자치경찰은 서울시와 한몸이 되도록 서울시 소속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재정권을 통하여 자치경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요구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전환하고, 기타 세수 확보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국세 및 지방세 활용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서울시 자치경찰의 실질적 임용권 확보 방안

### 가. 기본 방향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공정인사 구현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한다.

현행 관련 법령을 보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22) 상계보고서, 참조

##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⑧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경찰임용권의 수입 및 재위임 현황<sup>23)</sup>

### 1) 경찰임용권 수입현황 및 재위임 현황

23) 서울시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1.11, 13면.

가) 경찰임용권 수입현황

경찰임용권의 수입현황을 보면, 서울시장은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을 가진다. 단,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일부 임용권을 가진다. 즉, 경정의 파견,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그리고 신규채용 및 면직,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가진다.

현재, 수입임용권의 적용범위는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일선 지구대, 파출소 제외)이다. 담당업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 자치경찰사무(업무비율 51% 이상) 수행 경찰관이고, 담당인력은 3,752명('21.9.1. 현원 기준)이다.

2) 임용권 재위임 현황

2021년 7월 12일 서울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휴직·복직·직위해제 등 수시 인사와 위원회 재량·판단 여지가 없는 중징계, 실무계급인 경위 이하의 전보권 등을 한시적으로 서울경찰청장에게 일부 위임<sup>24)</sup>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부터 위원회가 모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표 7-4〉 임용권 재위임 현황

구분	전보	파견	휴직·복직· 직위해제	중징계 (파면·해 임·강등·정 직)	승진	신규채용 ·면직
경정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서울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 재위임 가능) ※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서울경찰청장이 임용권 보유				대통령	대통령
경감					서울시장	경찰청장
경위					서울시장	경찰청장
경사 이하						경찰청장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내부 자료

나. 지원 방안

1) 실질적 임용권 행사의 개선

서울시장이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특히, 경감과 경위 승진의 경

24) (경정 이하) 휴직·복직·직위해제, (경감 이하)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위 이하) 전보

우, 서울경찰청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서울시장이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므로,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행사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사자료 검토가 필요한데, 경찰청의 인사시스템의 접근 권한도 없어서 실질적인 임용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앞선 언급한 법령의 제개정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2)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접근 관련 사항

### 가) 자치경찰위원회 시스템 접근 관련 사항<sup>25)</sup>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시스템 접근 현황을 보면, 위원회 파견 경찰관에 한해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일부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고,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 관련 시스템은 접근이 불가하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시스템 중 접근이 가능한 필요한 시스템은 '경찰 표준인사시스템' 접속 권한이 필요하다. 경찰청·인사혁신처에서 국가경찰이 운영하는 표준인사시스템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접속권한 부여가 요구된다.

## 3) 개선방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별도 승진 인원 배정과 서울시 소속하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한 경찰시스템 접근에 관해서도 경찰청과의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필요한 시스템의 접속이 전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sup>26)</sup>.

25)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청 시스템 접근 관련사항을 요청한 자료임;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79면.

26) 최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접속권한을 일부 부여한 것으로 알려짐(내부관계자 인터뷰)

## 〈 참고 문헌 〉

### ■ 단행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편, 서울자치경찰 1주년백서, 2022. 06.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편,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이해, 2021.

### ■ 연구논문

신경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1호, 2021. 3 : 34~45,

서울시 자치경찰제 정책선호도 및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 '21.12월, 엠브레인퍼블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2023.

이기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제주자치경찰단 편, 제주형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및 발전방안, 제주자치경찰단, 2022.

최종술, 한국자치경찰제가 나아갈 길,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편, 2022. 03.10. : 8~13

최종술, 자치와 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편, 2022.09.01. : 12~16,

최종술, 자치경찰제의 발전단계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0.12월호

최종술, 한국자치경찰제가 나아갈 길,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편, 2022. 03.10

최종술, 자치와 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편, 2022.09.01.

최천근,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 Special Issue, 2018: 31.

홍승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2호, 2022

### ■ 서울시의회 보고서

서울시 의회.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79면.

서울시 의회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1.11, 13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2. 7. 25.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09. 06.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 11. 29.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 3. 29  
 행정자치위원장,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 2022년 11월 7일

## ■ 기타 참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11차 회의록(2023.05.02.)  
 행정안전부 통계, 2022년 전국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 202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https://gov.seoul.go.kr/apc/>, 검색일 2023. 08. 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http://jmpfine.jeju.go.kr/> 검색일 2023. 08.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3. 7. 21.]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2023년 08월 02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 2023년 07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 )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2341호, 2022. 1. 18., 일부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일부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일부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7989호, 2021. 5. 20., 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7989호, 2021. 5. 20., 제정]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1126호, 2020. 10. 27.,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2021. 2. 3.,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31956호, 2021. 8. 31.,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관련지)

##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김상인

주관부서 : 행정자치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법제담당관(법제담당관 장혜명, 주무관 김대인, 주무관 이상규)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2180-8028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2-2180-7904 (법제담당관)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구기관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최종술

연락처 : 051-890-2402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300-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비매품/무료

95350



9 791165 999582

ISBN 979-11-6599-958-2 (PDF)